#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518 발의연월일: 2025. 2. 27.

발 의 자: 박해철 · 김문수 · 고민정

임미애・김 윤・박홍배

송옥주 · 송재봉 · 최민희

이광희 · 김승원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근로 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취업제한기간이 한국에서 장기간의 취업활동을 원하는 외국 인근로자에게 불법체류의 유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국내 생산인구 감소와 다양해지고 있는 외국인력 수요 에 부합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미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근로 자의 취업제한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함으로서 저출 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산업현장의 인력수요에 대 응하여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1 8조 등)

#### 법률 제 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3년의"를 "5년의"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3년이"를 각각 "5년이"로 한다.

법률 제9798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중 "3년에서"를 "5년에서"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외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
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	<u>5</u>
<u>년의</u>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년의
수 있다.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관한 특례) ①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도 불	
구하고 한 차례만 <u>2년</u> 미만의	3 <u>년</u>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	
장받을 수 있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	1
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u>3년이</u> 만	5 <u>년이</u>
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	
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	
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2.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	2
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에	
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u>3년이</u>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	5년이
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	

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 ② · ③ (생 략)

법률 제9798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 부칙

제5조(계약기간 상한에 관한 경과조치)이법시행당시종전의 제9조제3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이법시행후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3년에서 종전의 제9조제3항에 따른 총근로계약기간을 제외한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수 있다.

②・③ (현행과 길	<u> </u>
법률 제9798호 외	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
률 부칙	
제5조(계약기간 상학	한에 관한 경
과조치)	
	<u>5</u>
<u>년에서</u>	